

- 10) 기간제교원 NEIS 연계 인력풀 등록 및 평가
- 가) 기간제교원 NEIS 연계 인력풀 등록 방법
- 등록대상: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희망자
 - 등록방법: 온라인 교직원 채용 사이트(<https://edurecruit.go.kr>)에서 온라인 등록
 - 등록자격: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보건, 사서, 영양, 상담 관련 자격소지자
 - 등록 상한 연령: 62세
 - 등록 기간: 수시
 - 등록제한자: 등록일 기준 상한연령 초과자, 명예퇴직자,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 등
- 나) 기간제교원 평가
- 재임용 등을 위해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 할 수 있음(서식21~23 참고)

나. 산학겸임교사

- 산학겸임교사 운영은 별도의 「경기도교육청 공립학교 산학겸임교사 운영 지침」에 따름
- ※ 산학겸임교사 운영 :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

다. 명예교사

- 1) 임용 사유 및 요건(초·중등교육법 제22조)
- 가)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규교원 외 별도로 임용
- 나)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 지도, 생활지도, 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사를 보조함(교원자격증 소지 불문)
- 2) 임용자격 :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. 다만,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
- 3) 임용 기간 :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,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
- 4) 보수 등 처우 :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

라. 강사

- 1) 임용 사유 및 요건
- 가)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 발생(초·중등교육법 제22조)
- 나)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(강의)만 하는 경우(초·중등교육법 제22조)
- 다)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긴급하게 대체강사를 요하는 경우(이후 병가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은 기간제교원 채용)